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주호 (교육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는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학 현장에서는 위 “대학”을 행정·조직 운영상의 단과대학으로 이해하여, 해당 단과대학 내에 4년제 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업연한이 6년인 경우를 명확하게 할 필요 있음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해 수업연한을 정한 해당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면서, 대학이 법령에서 정한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관계되지 않는 학사학위과정은 수업연한 6년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이에 기존의 수업연한 6년인 “대학”을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를 양성하는 학사학위과정으로 명확히 하고, 해당 인력의 양성과 관련 없는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학과를 같은 단과대학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의 수업연한 6년의 학사학위 과정은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약사법」 제2조의 약사 및 「수의사법」 제2조의 수의사 양성을 위한 모집단위로 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는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수의사를 양성하는 학사학위과정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후단 중 “의학과·한의학과·치의학과 및 수의학과를”을 “전공 교육과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학의 약학대학(한약학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학사학위과정”을 “약사법 제2조제2호 전단의 약사(藥師)를 양성하는 학사학위과정(이하 “약학과”라고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약학대학”을 각각 “약학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한 약학대학 학사학위과정은”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제3호 단서 중 “대학의 의과대학”을 “제25조 제1항의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사를 양성하는 학사학위과정”으로 한다.

제71조제2항 중 “학부(의과대학에 있어서는 예과)”를 “학부”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4학년도 학생입학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수업연한 등) ① <u>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학의 의과대학 · 한의과대학 ·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u> 이 경우 그 교육과정은 예과를 각각 2년으로, <u>의학과 · 한의학과 · 치의학과 및 수의학과를 각각 4년으로 운영한다.</u>		제25조(수업연한 등) ① <u>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는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사·치과의사·한 의사 및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수의사를 양성하는 학사학위과정으로 한다.</u> -----		
		----- <u>전공 교육과정을</u> -----		
② <u>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학의 약학대학(한약학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 중 해당 대학이 선택하는 하나로만 운영한다.		② ----- <u>약사법 제2조제2호 전단의 약사(藥師)를 양성하는 학사학위과정(이하 “약학과”라고 한다.)</u> -----		

1. 다른 학교,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이수하는 기초 · 소양 교육과정 2년과 <u>약학대학</u> 에서 이수하는 전공 교육과정 4년		1. ----- ----- ----- <u>약학과</u> ----- -----		
2. <u>약학대학</u> 에서 이수하는 기초 · 소양 교육과정 2년과 전공 교육과정 4년		2. <u>약학과</u> ----- ----- -----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교육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전의 교육과정(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교육과정인 경우에는 전공 교육과정으로 한정한다)을 이수 중인 학생에 대한 약학대학 학사학위과정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도 불구하고 변경 전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

제29조(입학·편입학 등) ① (생략)

②다음 각 호의 사람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호·제3호·제8호·제9호·제11호·제12호·제12호의2·제13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총학생수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1.·2. (생략)

3.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3학년에 편입학하는 사

③-----

----- 대
해서는 -----

-----.

제29조(입학·편입학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2. (현행과 같음)

3. -----

람. 다만, <u>대학의 의과대학</u>으로 편입학하는 사람 및 전문대학의 학과 중 수업연한이 3년 이하인 학과로 편입학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 ~ 16. (생 략) ③ ~ ⑦ (생 략) 제71조(구 학교 등의 졸업자의 자격인정) ① (생 략) ②1년6월을 수업연한으로 하는 종전의 교육부중등교원양성소 수료자는 대학 <u>학부(의과대학에 있어서는 예과)</u> 1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③ · ④ (생 략)	- . --- <u>제25조 제1항의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사를 양성하는 학사학위과정</u>----- ----- -----. 4. ~ 16.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71조(구 학교 등의 졸업자의 자격인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u>학부</u> ----- ----- -----. ③ · ④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과	
연 락 처	(044) 203 - 6916, 6917